

선언

머리말

- 1, 인류와 자연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불균형 현상,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성은 손실, 대지와 대양의 훼손은 인간존재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고 현재와 미래세대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 2, 극도로 중대해진 현재상황은 전인류의 주된근심이 되어 새로운 원칙과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 3,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남녀평등사상, 세계인권선언에서 인정된 원칙과 권리를 향한 애착을 상기하며
- 4, 1972년 스톡홀름의 환경에 대한 선언, 1982년 뉴욕의 자연세계헌장, 1992년 리오의 환경과 발전 선언, 2000년 천년선언과 2012년 '우리가 원하는 미래'와 같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안을 상기하며
- 5, 이같은 위기가 특히 이분야에 관련된 사람들, 조직, 기관, 도시의 망과 같은 활동가들에 의해 2000년 지구헌장에 인식된 사실을 상기하며
- 6, 모든 개인과 인간의 조직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인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세대를 동시에 포함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또 인류의 계속성은 바로 이 세대간의 연관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 7, 인류의 근원인 지구는 유기적 관계를 가진 하나의 전체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또 인류의 존재와 미래는 자연적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 8,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자연을 보호할 의무는 본질적으로 유기적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또 환경을 건강한 상태로 보존하고 그 질을 향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 9, 현재대 즉 모든 나라와 모든 국민, 정부간 조직, 기업, 특히 다국적기업, 비정부조직, 지역관청과 개개인인 이문제의 첫번째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며
- 10, 이 특유한 책임은 인류에 대한 의무를 구성하며 또 이 의무는 권리처럼 정당하고 민주적이며 친환경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실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며
- 11, 인류와 그 인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가진 고유한 존엄성을 인식하는 것은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반을 이룬다는 사실을 고려하며
- 12, 다음과 같이 원칙과 권리와 의무를 공포하고 본선언을 채택한다:

원칙

제1 항: 세대의 그리고 세대의 책임 공정 연대의 원칙은 인간에게 특히 국가들에게 공동적이면서도 분화된 방식으로 인류와 지구의 보호와 보존에 함꼐하도록 요구한다

제2 항: 인류와 그 구성원의 존엄성의 원칙은 그들을 위한 기본적 필요의 충족과 신성불가침한 권리의 보호를 함축한다. 각각의 세대는 미래세대를 위해 이 원칙의 존중을 보장한다

제3 항: 인류의 존재 연속성의 원칙은, 자연을 특히 인간과 비인간의 구별을 떠난 모든 생물을 존중하는 신중한 인간 활동을 통해, 치명적이고 돌이킬수없는 결과가 여러세대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인류와 지구의 보호와 보존을 보장한다

제4 항: 특정한 세대 특히 미래의 세대에 속한다는 이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은 인류를 보호하며, 현세대에 의해 기획된 활동이나 대책이 자연자원과 선택의 여지의 과도한 감소를 미래세대에게 유발하거나 영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를 요구한다

인류의 권리

제5 항: 생존하는 종의 총체로서의 인류는 생태학적으로 뒷받침이 있는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 권리를 가진다

제6 항: 인류는 책임있고 공평하며 연대적이고 영속적인 발전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7 항: 인류는 공동유산,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물질과 비물질 유산을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제8 항: 인류는 공유재산 특히 공기, 물, 토양을 보존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자연자원에 보편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접근할 권리가 있다. 미래세대는 또다시 그것을 그들의 미래세대에게 전달할 권리를 가진다

제9 항: 인류는 평화로운 권리를 가진다. 특히 장점을 평화롭게 해결할 권리를 가지며 환경, 식량, 보건, 경제, 정치 분야에 있어서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특히 미래세대를 비롯한 여러세대를 전쟁의 참해로부터 보존할것을 지향한다

제10항: 인류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오랜 숙고에 의해 특히 인류와 자연에 내재하는 리듬에 의해 집단적으로 함께 내리는 선택에서 행사된다.

인류를 위한 의무

제11항: 현재대는 살아있는 모든 종의 존중처럼 인간 권리의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불가분의 관계인 인간과 인간 권리 존중은 미래세대를 위해 적용된다.

제12항: 자원 생태계 균형 자연· 문화· 물질· 비물질 유산과 같은 공공유산의 책임자인 현재대는 이 유산을 보존하고 신중하게 책임있게, 공정하게 사용할 의무를 진다.

제13항: 지구의 생명을 영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재대는 대기와 기후 균형 보존을 위한 모든 노력의 의무를 지며, 환경의 요인에 연관된 사람들의 가능한 모든 이동을 예방하고 경고하고 만족시키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연관된 사람들을 구조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14항: 현재대들은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인간과 다른 생물의 보존과 건강을 향해 주도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위해 현재대들은 특히 인간의 존엄성과 전통적인 지식 생태계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생물자원과 유전학적 자원어의 도달과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제15항: 나라들과 다른 권리의 주체들 공적· 사적 참여자들은 영원성의 개념을 가지고 인간적이며 항구적인 발전을 추진할 의무를 진다. 본항을 비롯하여 본 선언에 의해 제시된 원칙들 권리들 의무들은 학교교육, 가정교육과 행동으로의 실행 속에 존재해야 한다.

제16항: 모든 나라들은 본 선언에 의해 제시된 원칙들 권리들 의무들의 존중 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를 조직하여 그 유효성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Traduit par / Translated by: Hyesin Bordeaux